



한의학의 미래, 의료의 미래
서울특별시한의사회
Seoul Korean Medicine Association

수 신 분회장

(경유) (사무국장)

제 목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피부미용 의료광고 관련 회원 주의안내 협조 요청

1. 한의약과 협회 발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
2. 관련근거 : 대한의-2024-08-0181 (2024.8.22.)
3. 중앙회는 최근 양의사들이 피부미용을 특화·집중 진료·표방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대해 사전심의 받지 않은 광고 및 불법 광고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건소를 통해 다수 신고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4. 인스타그램 등 SNS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의료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로 규정되어 반드시 사전심의를 받은 후 광고해야 하며, 사전심의를 받지 않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,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,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할 경우 행정처분(시정명령·업무정지 등) 또는 형사처벌(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)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5. 인스타그램 등 SNS 이외에도 현수막, 교통수단, 인터넷 매체 등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한 광고는 반드시 우리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(<https://ad.akom.org>) 사전심의 후 광고해야 함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주의·계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 아울러,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닌 경우 의료광고 금지규정 등 의료법령에 준한 광고인지 등 기 광고된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불측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안전한 의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귀 분회 소속회원분에 적극 안내 부탁드립니다. (※ 문의처(중앙회 의료광고심의팀) : 02-2657-5037,5039,5061). 끝.

서울특별시한의사회



부장 윤상환

처장 김태준

협조

서한의 - 제 185 호 (2024.08.23.)

우)0258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489 6층 / 홈페이지 : <https://www.skma.or.kr>

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전화 : (대)02-960-0811 / 팩스 02-6944-8075 / E-mail : skma@skma.or.kr